

광명시 정책고문 등 운영 규정

제정 2016. 2. 4 훈령 제365호
일부개정 2016. 12. 20 훈령 제380호
일부개정 2018. 7. 31 훈령 제399호(훈령 용어순화 등 일괄정비 훈령)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광명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정책사안과 업무에 대해 각 분야의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고문, 자문관, 특별보좌관, 상담관 등을 위촉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고문, 자문관, 특별보좌관, 상담관 등(이하 “정책고문 등”이라 한다)의 명칭은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담당업무를 고려하여 따로 정한다.

제3조(기능) 광명시 정책고문 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이 요구하는 고문, 자문, 보좌, 상담에 응하고 필요한 각종 대내외 활동을 할 수 있다.

1. 시정 주요 현안과제에 대한 해결방안
2. 시정 발전을 위한 장·단기 과제 발굴 및 새로운 정책제안
3. 시정 전반에 대한 정책 컨설팅
4. 그 밖에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

제4조(구성) ① 정책고문 등은 각 분야별로 15명 내외로 구성한다.

② 정책고문 등은 참신한 아이디어와 시정에 열정을 가진 민간 전문가, 퇴직 또는 장기과건 공로연수중인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퇴직 또는 장기과건 공로연수중인 공무원은 별표 신청서를 제출하고 「광명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른 광명시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6. 12. 20>

③ 정책고문 등의 위촉분야는 안전, 고용, 경제, 국제, 복지, 교육, 문화예술, 체육, 도시, 녹지, 환경, 언론·홍보, 관광, 보건, 안보, 세정 등으로 한다.

제5조(임기) 정책고문 등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6조(해촉) 시장은 정책고문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광명시 정책고문 등 운영 규정

1. 정책고문 등이 위촉 해지를 원하는 경우
2. 제3조 각 호의 업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한 경우
3. 정책고문 등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그 밖에 정책고문 등으로서 업무를 수행하기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

제7조(예우 및 활동지원) ① 정책고문 등에게는 그 명칭을 대내외에 공식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② 정책고문 등의 활동에 소요되는 필요적 경비지원 및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0>

③ 광명시 각 부서 및 소속기관은 정책고문 등으로부터 제3조의 규정에 범위에서 자료요구 등의 협조 요청이 있는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8. 7. 31>

제8조(비밀누설 금지) 정책고문 등은 활동을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사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기타)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정책고문 등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12. 20 훈령 제380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7. 31 훈령 제399호, 훈령 용어순화 등 일괄정비 훈령>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별표] <신설 2016. 12. 20>

광명시 시정자문관 신청서

분 야			
성 명		생년월일	
퇴직당시 소속 및 직위			
연 락 처			
주 소			
<p>본인은 광명시 정책고문 등 운영 규정 제4조제2항에 따라 시 행정 발전에 기여하고자 상기와 같이 「광명시 시정자문관」을 신청합니다.</p> <p>20</p> <p style="text-align: right;">위 본인 성명 (서명)</p>			
<p>광명시장 귀하</p>			

자기소개서 및 신청동기

활 동 계 획 서